

장학금 지급규칙

제정	1983. 1. 25
전면개정	2008. 7. 26
개정	2008. 10. 10
개정	2011. 07. 06
개정	2011. 12. 28
개정	2013. 3. 18
개정	2013. 12. 24
개정	2015. 8. 11
개정	2016. 2. 29
개정	2016. 8. 10
개정	2018. 8.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65조에서 규정한 장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이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학사과정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학비감면 포함)은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등)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8.11.) (개정 2016.2.29.)

1. 우수장학 : 을곡장학, 다산장학, 원천장학, 외국인장학, 복수학위장학, 신입계속장학
2. 저소득층 장학 : 아주복지장학, 아주희망장학, 인간존중장학
3. 근로장학 : 면학장학, TA장학, 인턴장학
4. 교직원장학 : 본교교직원자녀장학
5. 기타 장학 : 보훈장학, 새터민장학, 리더장학, 자기개발장학, 학장추천장학, 멘토링장학, UR(학부생연구)장학, 가족장학, 국가고시장학, 국가자격장학, 글로벌장학, 사회봉사장학, 시간제등록생장학, 체육특기자장학, 실사구시장학, 세계일가장학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총액과 지급인원 및 금액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8.11)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설치와 구성) ①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및 입학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장학 기본계획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 세부방침
3.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장학생 선발 대상 및 기준

제7조(선발대상)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려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학생
3. 가정사정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
4. 본 대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대우학원의 임직원 직계자녀 및 산하 대학 교직원 직계자녀
5. 교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학생
6. 학술, 체육, 사회봉사, 학생자치활동 등의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7. 국제화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의 목적으로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학생
8.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제8조(교내장학생 선발기준) ①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교환학생 및 인턴십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단 신입생과 편입학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하여 취득학점 및 성적과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개정 2013.12.24.) (개정 2016.2.29.) (개정 2016.8.10) (개정 2018.8.31)

1. 제7조 제1호에 따라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3.80 이상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2. 제7조 제2호의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가계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이나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4. 제7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학생처장,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외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① 각 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외장학생 추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24)

1.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대상 학생의 소속 및 전공 등을 지정하여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다.
2.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대상 학생을 지명하여 추천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천한다.
3. 각 장학단체에서 수혜대상 학생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학과 또는 전공에 의뢰하거나 직접 추천한다.

② 교외장학생 추천 대상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교환학생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2.29.)

제10조(선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 중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1. 복학생 (단, 학업 성적우수장학에 한함)
2. 휴학 및 제적학생
3. 징계 처분이 해제된 학생
4. 「아주대학교 학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교외장학기관의 방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신설 2013.3.18)
5. 장학금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학생(신설 2013.3.18)
6. 기타 위원회에서 선발자격을 제한한 학생

제11조(대여장학금) ① 대여장학금은 당해 학기에 교내·외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수혜받지 않은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여장학금 수혜횟수는 재학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③ 대여장학금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2.29.)

④ 대여장학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⑤ 각 학과에서 추천한 대여장학금 수혜 대상학생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학생처에 대여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1. 교비대여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교비대여 장학금 수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각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⑥ 대여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은 졸업 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여 받은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장학금은 무이자로 대여한다.

1. 일시상환 : 대여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2. 분할상환 :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전액을 상환한다.

⑦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학생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한다. 다만, 수혜를 받은 학생이 제적,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액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장학금 지급 및 장학관리

제12조(신청기간)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등록금을 고지할 때 장학금액 만큼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선발된 학기의 등록을 마친 경우나 장학금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급제한) ① <삭제 2016.2.29.>

② 장학금 지급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성장학, 리더장학, 생활비성장학, 자기개발장학, 특성화장학, 포상성장학, 학업지원비성장학, 학장추천장학, 해외연수성장학, 봉사장학, 기숙사비지원장학, 바르게장학은 제외한다. (개정 2013.3.18.) (개정 2016.2.29.) (개정 2018.8.31)

③ 위원회의 의결이나 교외장학기관의 방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1.07.06) (개정 2011.12.28)

제15조(계속장학생 관리) ① 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제8조의 선발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학생
3. 입학전형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전과 또는 특기생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
4.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의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군 입대 또는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이외의 사유로 휴학한 학생과 2학년(4개 학기) 수료 이전에 일반 휴학한 학생. 단, 군 입대를 전제로 일반 휴학한 학생이 동일학기 내에 군 입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외

② 입학전형에서 다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이 제8조의 선발기준에 미달하여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다음 학기 성적이 선발기준을 상회하면 1회에 한하여 장학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특별장학생은 자격회복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선발된 교내장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단, 추가선정 및 가계곤란장학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17조(장학생의 교체)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장학생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추천 의뢰를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제14조의 장학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제14조의 장학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제14조의 장학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이전에 시행된 제8조의 교내장학 선발기준 및 제14조의 장학금 지급제한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의 성적기준은 2019학년도 신·편 입학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서식 1]

교비대여장학금 지급 신청서

일금 : (₩ . .)

위 금액을 년 학기 등록금 납부를 위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호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생 본인

대학 학과 학년
성명 : (인)

보호자(채무자)

현주소 : 전 화 :

성 명 : (인)

학생과의 관계 :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교비대여 장학금 수혜 추천서

대 학 :

학 부 :

학 년 :

성 명 :

전 공 :

학 번 :

위 학생을 년 학기 교비 재원에 의한 대여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도교수 : (인)

대 학 장 : (인)

아 주 대 학 교 총 장 귀 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아주대학교(신용정보제공자) 귀하

본인이 수혜한 교비대여의 상환과 관련하여 귀교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정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때, 귀교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인)

아주대학교(신용정보제공자) 총장 귀하